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1가단52908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진현중

피 고 1. B

2. C

피고 2.의 소송대리인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담당변호사 박재형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우상

변 론 종 결 2022. 9. 27.

판 결 선 고 2022. 10. 25.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90/4,560 지분에 관하여 2018. 7. 13.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90/4,560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8. 7. 16. 접수 제329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 11. 22.부터 2016. 7. 29.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합계 142,500,000원(피고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피고의 동생인 D에게 대여한 돈 제외,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	비고
1	2011. 11. 22.	25,000,000원	
2	2011. 12. 6.	20,000,000원	
3	2012. 2. 22.	10,000,000원	
4	2012. 2. 24.	10,000,000원	
5	2012. 3. 23.	5,000,000원	
6	2012. 5. 14.	20,000,000원	선이자 55만원 공제
7	2012. 5. 23.	10,000,000원	
8	2012. 8. 27.	4,500,000원	
9	2013. 10. 8.	8,000,000원	
10	2013. 10. 22.	3,000,000원	

11	2014. 8. 7.	7,000,000원	
12	2014. 9. 23.	5,000,000원	
13	2016. 7. 29.	15,000,000원	
합계		142,500,000원	

나. 피고 B는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변제를 위하여 2012. 9. 3.부터 2014. 9. 26.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500,000원(D로부터 변제받은 돈 제외)을 지급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
1	2012. 9. 3.	4,500,000원
2	2013. 4. 9.	5,000,000원
3	2013. 10. 17.	8,000,000원
4	2013. 10. 31.	3,000,000원
5	2014. 8. 29.	5,000,000원
6	2014. 8. 29.	2,000,000원
7	2014. 9. 26.	5,000,000원
합계		32,500,000

다. 피고 B의 남동생인 피고 C은 2018. 7. 13.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의 공유지분인 1,190/4,560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8. 7. 16. 접수 제329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나머지 원금 110,000,000원(= 142,500,000원 - 3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그 동안 원금

163,000,000원(D 명의의 계좌에서 변제한 돈 포함)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이미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친구인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부 이자를 받기로 하고 최초 합계 4,500만원(인정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표 중 순번 1, 2)을 빌려주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 B가 2012. 1. 21. 및 같은 해 2. 21.에 원고에게 변제한 돈은 위 4,500만원에 대한 2부 이자에 해당하는 90만원($= 4,500\text{만원} \times 2\%$)과 일치하는 점, ② 피고 B는 원고에게 2012. 11.경부터는 매월 145만원을, 2014. 8.경부터는 95만원을, 2016. 6.경부터는 50만원을 각각 변제하였는데, 그 금액의 규모 및 정기적·계속적인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점, ③ 원고와 피고 B는 이자 지급과 관련하여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④ 원고는 2020. 4. 28. 피고 B에게, 피고 B가 원고에게 재작년에 보낸 1,500만원이 원고가 피고 B에게 빌려 준 돈 1억 1천만원 또는 피고 B의 남자친구인 E에게 빌려 준 돈 5,000만원 중 어느 돈을 변제한 것인지 물어보면서 “E는 5월에 다 돌려주거나 일부라도 5월부터는 정리해 나간다고 하던데 너도 정리를 하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 B는 원고에게 “지난번 마지막 만났을 때 천오백 E꺼로 준걸로 하자고 얘기했었는데. 나도 형편 되면 빨리 정리하고 싶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이 사건 대여금의 나머지 원금의 액수에 대하여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이자 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 B가 원고에게 원금 및 이자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피고 B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원금은 11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 B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수익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725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해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사해행위 당시 피고 C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

별지 목록

1. 경기도 양평군
면적 1521㎡
 지분 4560분의 1190
2. 경기도 양평군
면적 1521㎡
 4560분의 1190
3. 경기도 양평군
면적 1518㎡
 4560분의 1190

